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준칙(안)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중 제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도유재산가액평정조서중 “수량” 다음에 “공시지가”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읍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동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중 제2조및 제4조,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읍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 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회 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② 읍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분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같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93년 8월 27일

나. 제 안 자 : 부 천 시 장

다. 회부일자 : 93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93년 9월 9일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조호실)

가. 제안이유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중 민원인이 원하여 복사 제공시 자료의 범위, 제한, 복사료 수납처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민원인이 원할때 복사료를 수납한후 복사해 주도록 함.

(안 제6조)

○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는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복사를 할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안 제7조)

○ 자료의 복사는 부분복사에 한함. (안 제8조)

○ 복사료는 A4, B5 단면 1장 20원, A3, B4 단면 1장 30원씩 수납토록 함. (안 제9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 음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3
의 결	93. 9. 10
년 월 일	(제22회)

제출년월일 : 1993. 8. 27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중 민원인이 원하여 복사 제공시 자료의 범위, 제한, 복사료 수납처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를 민원인이 원할때 복사료를 수납한 후 복사해 주도록 함 (안 제6조)
-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는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복사를 할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안 제7조)
- 자료의 복사는 부분복사에 한함 (안 제8조)
- 복사료는 A4, B5 단면1장 20원, A3, B4 단면1장 30원씩 수납토록 함 (안 제9조)

□ 법적근거

- 도서관진흥법 제29조
- 도서관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제11조로 하고, 제6조내지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료의 복사) ①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관장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복사료를 수납한 후 복사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서의 “자료의 복사”라 함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1.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2.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3. 기타의 사유로 복사해 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판단하는 자료

제8조(복사제한) 자료의 복사는 원칙적으로 부분복사에 한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복사료)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부) 도서관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복사작업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복사소모품 사용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복사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자료의 복사 수수료

(단위 : 원)

규격	단위	수수료
A 4	장 (단면)	20
B 5	장 (단면)	20
A 3	장 (단면)	30
B 4	장 (단면)	30

(별지 제1호서식)

복 사 작 업 일 지

년 월 일	신 청 인		자 료 명	규 격	수 량	결 계		
	주 소	성 명				계	계 장	관 장

(별지 제2호서식)

복 사 소 모 품 사 용 일 지

년 월 일	품 명	규 격	수 (1)	급 (2)	잔 (1-2)	결 계		
						계	계 장	관 장

(별지 제3호서식)

복 사 료 수 납 대 장

(단위 : 원)

년 월 일	계	규 격				결 계		
		A4	B5	A3	B4	계	계 장	관 장

관 계 법 령

도서관 진흥법 (개정 1991. 3. 8 법률 제437호)

제29조(사용료) 공공도서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정 1991. 4. 8 대통령령 제13342호)

제30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데이터 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 연구실, 회의실등 이용 수수료
3. 자료 복사료
4. 장기간 강습, 교육 참여에 대한 수수료
5. 입관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변상) 생략	제2조(변상) 현행과 같음.
제3조(입관거부) 생략	제3조(입관거부) 현행과 같음.
제4조(퇴관명령및 열람거부) 생략	제4조(퇴관명령및 열람거부) 현행과 같음.
제5조(도서관 출입제한) 생략	제5조(도서관 출입제한) 현행과 같음.
제6조(시행규칙) 생략	제6조(시행규칙) 제11조
(신설)	제6조(자료의 복사) ①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를 원할 때에는 관장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복사료를 수납한 후 복사를 해 줄 수 있다.
(신설)	② 제1항에서의 “자료의 복사”라 함은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7조(복사금지자료의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자료는 이를 복사할 수 없다.
(신설)	1.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
(신설)	2.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신설)	3. 기타의 사유로 복사해 주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도서관장이 판단하는 자료
(신설)	제8조(복사의 제한) 자료의 복사는 원칙적으로 부분 복사에 한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제9조(복사료)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복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제10조(비치장부) 도서관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복사작업일지(별지 제1호서식)
	2. 복사소모품 사용일지(별지 제2호서식)
	3. 복사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